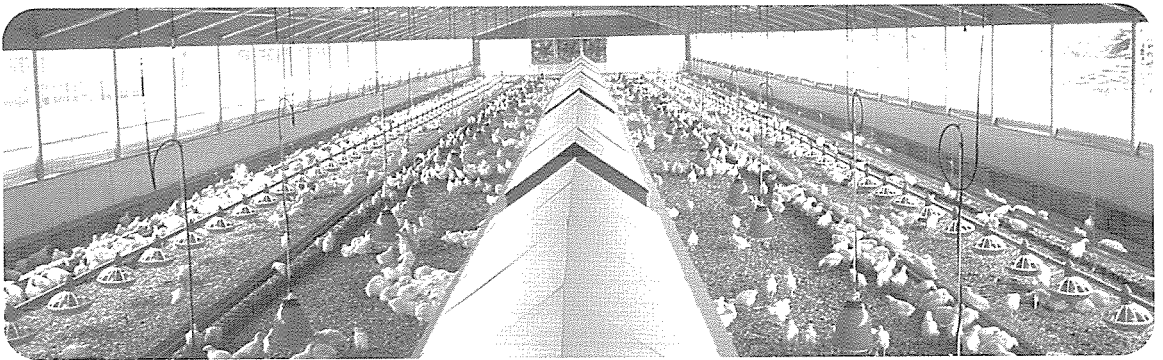


육계자조활동자금 지금부터 시작이다



국내 육계산업의 나아갈 활로중의 하나인 육계자조활동자금 사업의 초석이 되는 대의원 선거를 무사히 마쳤다.

전국 76개 선거구 중 74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이번 대의원 선거는 68개소에서 유효선거(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축산업자의 절반 또는 생산되는 가축이나 축산물의 3분의 2이상)가 이루어져 총 135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135명은 총 선출할 대의원 총수 150명의 90%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특히 육계자조금 대의원 선거는 유효득표미달 선거구(6개선거구)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가 참여율이 58.7%(사육수수는 63.7%)에 이르는 등 지금까지 치러진 자조금 대의원 선거 중 최고의 농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유효선거구 중 농가숫자를 맞추지 못해

사육수수로 유효요건을 맞춘 곳은 경북, 경남 각각 1곳씩 2개소에 불과, 높은 투표율을 자랑하고 있다.

단순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만 볼 때 육계 자조금 사업은 순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육계자조금 사업의 향방은 이제 곧이어 개최될 대의원 총회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되지만 당초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는 마련된 것이다.

자조금 대의원회가 육계자조금 사업의 출범에 있어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이다.

지난번에도 거론했듯이 자조금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자조금 사업 계획을 심의 의결하며 그리고 또 집행기구인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본 지면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것은 육계자조금의 원론적인 것이다.

육계자조금의 구성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일반 육계사육을 하는 부류이며 둘째가 계열주체와 계약사육을 하는 농가들이고, 셋째가 계열화 사업주체이다.

육계자조금 사업의 재원은 위에서 열거한 세 종류의 거출 주체와 정부보조금(거출금의 100%)으로 이루어진다.

자조금 거출은 자조금 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모든 집단이 거출 대상이며 자조금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이번 대의원 선거를 통해 시행하려고 하는 의무자조금이다.

‘평양감사도 제 싫다면 할 수 없다’는 고언(苦言)이 있듯이 강제 조항이라 해도 이번에 선출된 대의원들이 자조금 사업이 필요 없다는 의결을 하게 되면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은 시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자조금사업의 필요성을 인정,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대의원들은 전년도 생산물 평균 가격의 1000분의 5이내에서 얼마를 거둘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 육계사육농가는 이익 발생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조금 거출이 당연시되는 사항이다.

문제는 계열주체와 계약사육농가가 어떻게 자조금을 분배하느냐가 관건이다.

일부 계약사육농가들의 경우 닭고기가격이 상승하면 계열주체가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만큼 계열주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며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자조금 전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도 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닭고기 소비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면 계약사육 농가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사육 회전수가 늘어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세보너스가 지급되는 등 혜택을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자조금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조금을 내지 않게 되면 자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계열주체들도 거출되는 자조금의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또한 대의원 선거이전에 농가대표들과 만나 자조금 분담에 대한 의견도 교환된 만큼 충분한 협상과 논의를 통해 적정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육계자조금 대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대의원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대의원총회에서 상생의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C